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 3. 16일자로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개정 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견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어르신 청소년과	1. 제개정이유 청소년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캠페인 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건의 (안 제3조) ○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 업무 협조 (안 제3조) ○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처리결과 화신 (안 제10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안 제13조)	해당부서 의견 없음 <별첨 :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나.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검토결과 의견)

구분	조례명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원안 동의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캠페인 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충실하게 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 붙임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1부.
 3.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장미령** 여성가족과장 **김선욱** 복지문화국장 02/06 이태욱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4029 () 접수 ()

우 120-70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 http://www.sdm.go.kr
 전화 1689 /전송 02-330-1624 / / 대시민공개